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조합제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1. 우리 부의 주택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법률 제14344호, '17.6.3. 시행, 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고,

법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17.6.3.)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의 내용 및 조합원 공개모집 신고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17.6.3 이후에 조합원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 위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시·도에서는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강원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대전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816 (2018.08.22.) 접수 주택정책과-14617 (2018.8.22.)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332 /전송 044-201-5529 / kdw0209@molit.go.kr / 비공개(5)